

제321회

임시회
2024. 4. 19.(금)

행정위원회 안건

행정위원회
제2차회의



영 동 군 의 회

Yeong Dong County Council

법령 불부합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영동군 2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영 동 군 수
제출년월일	2024. 4. 9.

법령 불부합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영동군 2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4-21
----------	---------

제출년월일 : 2024. 4. 9.

제 출 자 : 영 동 군 수

1. 제안이유

- 영동군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조례연구회에서 2023년에 영동군 조례에 대해 용역을 실시한 결과, 상위법령 및 인용 자치법규가 개정되었으나 미반영 된 조례가 확인되어 이를 일괄 개정함으로써 각 부서별 개별 자치법규 개정 추진에 따른 절차적 중복 등 행정의 비효율성을 해소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인용 자치법규가 개정되었으나 미반영 된 조례 개정
(안 제1조, 제4조, 제7조, 제10조, 제13조, 제27조, 제28조)
- 상위법 제명 및 조항이 개정되었으나 미반영 된 조례 개정
(안 제2조, 제3조, 제8조, 제12조, 제15조, 제17조, 제18조, 제20조~제26조)
- 상위법과 조례 내용이 상충되는 조례 개정
(안 제5조, 제9조, 제11조, 제14조, 제16조, 제19조, 제29조)

3. 근거법령 : 「지방자치법」 제28조

- 첨 부 1. 법령 불부합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영동군 2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구조문대비표 1부.
3. 관계법령 1부. 끝.

법령 불부합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영동군 2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조(「영동군 군민장 및 군청장에 관한 조례」의 개정) 영동군 군민장 및 군청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본문 중 “「영동군 무기계약근로자 관리 규정」”을 “「영동군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으로, “무기계약근로자와”를 “공무직근로자와”로 한다.

제2조(「영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개정) 영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제7조·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8조”를 “제10조,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지역보건법」 제9조”를 “「지역보건법」 제11조”로 한다.

제3조(「영동군 공인 조례」의 개정) 영동군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40조”를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0조”로 한다.

제3조 중 “「지방재정법」 제91조”를 “「지방회계법」 제46조”로 한

다.

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출납원의 직명은 「지방회계법」 제44조에 따라 수입대체경비 출납원,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등 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 물품 출납원 등으로 구분하여 각인 하여야 한다.

제4조(「영동군 포상 조례」의 개정) 영동군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 중 “공무원 및 「영동군무기계약근로자관리규정」”을 “공무원 및 「영동군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으로, “무기계약근로자,”를 “공무직근로자,”로 한다.

제5조(「영동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영동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중 ““전자민원창구”란 「전자정부법」 제9조”를 ““전자민원창구”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있도록 「전자정부법」 제9조에 따라”를 “있도록”으로 한다.

제6조(「영동군 시험수당 지급 조례」의 개정) 영동군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제7조(「영동군 난계국악기제작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영동군 난계국악기제작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전단 중 “「영동군 재무회계 규칙」”을 “「영동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8조(「영동군 난계국악박물관 설치 운영 조례」의 개정) 영동군 난계국악박물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6호 중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을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으로 한다.

제9조(「영동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영동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사회복지법인·비영리법인 또는 노인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을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필요한 사항은”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1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으로 한다.

제10조(「영동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의 개정) 영동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영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영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로 한다.

제11조(「영동군 공립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영동군 공립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이용료) 시설의 입소·이용자의 이용료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9조의2 또는 제27조의2를 따른다.

제12조(「영동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의 개정) 영동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으로 한다.

제13조(「영동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영동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영동군지방청소년위원회”를 “「청소년 기본법」 제11조에 따른 영동군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로 한다.

제18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군수는 수련관시설의 운영을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청소년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8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4조(「영동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영동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의”를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

다) 제89조제2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3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기금은 법 제89조제3항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에 사용한다.

제3조의2제1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5조(「영동군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영동군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호 중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5조”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로 한다.

제16조(「영동군 보육 조례」의 개정) 영동군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호를 삭제한다.

제17조(「영동군 청사위치에 관한 조례」의 개정) 영동군 청사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6조”를 “「지방자치법」 제9조”로 한다.

제18조(「영동군 군세 징수 조례」의 개정) 영동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영 제29조제2항제2호”를 “영 제30조제1항제2호”로, “세액(가산금을 제외한다)”을 “세액”으로 한다.

제4조 중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한다.

제19조(「영동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의 개정) 영동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나목 중 “「조세범 처벌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제20조(「영동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의 개정) 영동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6항”을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8항”으로 한다.

제21조(「영동군 폐기물 관리 조례」의 개정) 영동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4조제3항”을 “법 제14조제5항”으로 한다.

제22조(「영동군 공공하수도시설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영동군 공공하수도시설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위하여 「하수도법」 제74조제3항”을 “위하여 「하수도법」 제19조의2”로 한다.

제4조 중 “「공공하수도 관리업무 수탁자 선정 및 위탁성과 평가」”를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로 한다.

제23조(「영동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의 개정) 영

동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제14조의4제1항”을 “제14조의3제1항”으로 하고, “상시 운영하는”을 “매일 24시간 운행하는”으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영 제14조의4”를 “영 제14조의3”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영동군과 관할구역 경계를 접하는 시·군

제10조제1항 중 “영 제14조의5”를 “영 제14조의6”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 중 “영 제14조의3”을 각각 “영 제14조의5”로 한다.

제24조(「영동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의 개정) 영동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주차장법」 제21조의2제6항”을 “「주차장법」 제21조의2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영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로 한다.

제25조(「영동군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의 개정) 영동군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후단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4항”을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5항”으로 한다.

제26조(「영동군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의 개정) 영동군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31조 및 제64조”를 “제35조 및 제91조”로 한다.

제27조(「영동군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지원 조례」의 개정) 영동군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서식 중 “「영동군 70세 이상 어르신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지원 조례」”를 “「영동군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지원 조례」”로 한다.

제28조(「영동군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영동군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영동군 공공디자인 조례」 제8조”를 “「영동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6조”로, “공공디자인위원회”를 “지역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로 한다.

제29조(「영동군 체육진흥 조례」의 개정) 영동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조할 수 있다”를 “지원하여야 한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1. 영동군 군민장 및 군청장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5조(군청장 대상자) 군청장은 영동군(다음부터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및 「영동군 무기계약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 무기계약근로자와 「영동군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로서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사망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그 유가족이 별도의 장례를 행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군청장 대상자) ----- ----- ----- 「영동군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 -- <u>공무직근로자와</u> ----- ----- ----- ----- ----- ----- -----

2. 영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7조(설치)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와 「지역보건법」 제7조·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8조에 따라 군에 보건소를, 면에 보건지소를 설치한다. ②·③ (생략)	제7조(설치) ① ----- ----- ----- <u>제10조, 제13</u> <u>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u> ----- ----- ----- -----
제9조(소관사무) ① 보건소장은	제9조(소관사무) ① ----- -----

「지역보건법」 제9조에 따른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②·③ (생략)	「지역보건법」 제11조----- -----. ②·③ (현행과 같음)
--	---

3. 영동군 공인 조례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영동군 및 그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종류, 규격, 등록, 재등록, 공고방법, 보관방법과 그 밖의 공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0조----- ----- ----- ----- ----- ----- ----- ----- ----- -----.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이라 함은 「지방재정법」 제91조에 따라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지출원 또는 출납원과 그 대리인 및 분임자의 공인을 말한다.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 ----- ----- 「지방회계법」 제46조----- ----- ----- ----- ----- ----- -----.
제7조(각인) ① (생략) ② 제1항의 경우에 출납원의 직명은 「지방재정법」 제89조에	제7조(각인)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경우에 출납원의 직명은 「지방회계법」 제44조에

<p>따라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물품출납원으로 구분하여 새겨야 한다.</p>	<p>따라 수입대체경비 출납원,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등 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 물품 출납원 등으로 구분하여 각인 하여야 한다.</p>
---	--

4. 영동군 포상 조례

현행	개정안
<p>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지방행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및 「영동군무기계약근로자관리규정」에 따른 무기계약근로자, 군민(외국인을 포함한다. 다음부터 같다)이나 단체에 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군외 거주자나 단체에게 수여할 수 있다.</p>	<p>제2조(포상대상) ----- ----- 공무원 및 「영동군 공무직근로자 관리규정」----- 공무직근로자, -- ----- ----- ----- ----- --.</p>

5. 영동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략)</p>	<p>제2조(정의) ----- ----- ---. 1. ~ 3. (현행과 같음)</p>

<p>4. 5. 삭제</p> <p>6. “전자민원창구”란 「전자정부법」 제9조에 따라 설치된 전자민원창구를 말한다.</p> <p>7. (생략)</p> <p>제10조(전자민원창구 설치·운영)</p> <p>① 군수는 인터넷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전자정부법」 제9조에 따라 전자민원창구를 설치하여야 하며, 전자민원창구에 접수된 민원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p> <p>②·③ (생략)</p>	<p>6. “전자민원창구”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p> <p>7. (현행과 같음)</p> <p>제10조(전자민원창구 설치·운영)</p> <p>① ----- --- 있도록 ----- ----- ----- ----- ----- -----.</p> <p>②·③ (현행과 같음)</p>
---	--

6. 영동군 시험수당 지급 조례

현행	개정안
<p>제2조(수당)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u>안전행정부장관</u>이 시행하는 “국가시험시행 운영수당 등 집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p> <p>1. ~ 3. (생략)</p>	<p>제2조(수당) ----- ----- <u>인사혁신처장</u>----- ----- ----- -----.</p> <p>1. ~ 3. (현행과 같음)</p>

7. 영동군 난계국악기제작촌 설치 및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재산관리 및 회계처리) 국악기 제작촌의 재산관리와 회계처리는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및 「영동군 재무회계규칙」을 따른다. 다만 협약 또는 임대운영을 하는 경우의 회계처리는 군수가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재산관리 및 회계처리) -- ----- ----- ----- 「영동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 ----- ----- ----- -----.

8. 영동군 난계국악박물관 설치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5조(관람료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관람료를 면제한다. 1. ~ 5. (생략) 6.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7. ~ 17. (생략)	제15조(관람료의 면제) ----- ----- -----. 1. ~ 5. (현행과 같음) 6.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 ----- 7. ~ 17. (현행과 같음)

9. 영동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5조(운영) ①영동군수(이하 “군	제5조(운영) ①-----

<p>수”라 한다)는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운영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u>사회복지법인·비영리법인 또는 노인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u></p> <p>②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u>필요한 사항은</u>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p> <p>③ (생략)</p>	<p>----- ----- ----- -----</p> <p><u>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u> -----.</p> <p>②----- ----- 「<u>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u>」 제21조의2제1항 각 호의 <u>내용이 포함된</u> ---.</p> <p>③ (현행과 같음)</p>
---	--

10. 영동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현행	개정안
<p>제5조(준용) 지방보조금의 교부, 감독, 제재 등에 대한 사항은 「<u>영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u>」에 따른다.</p>	<p>제5조(준용) ----- ----- 「<u>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u>」 및 「<u>영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u>」를 ---.</p>

11. 영동군 공립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설치 및 운영 조례

현행	개정안
<p>제7조(이용료) 시설의 이용자에게 <u>제공한 서비스 급여비용의 청구 및 본인부담금의 수납이나 감면</u></p>	<p>제7조(이용료) 시설의 입소·이용자의 이용료는 「<u>노인복지법 시행규칙</u>」 제19조의2 또는 제27</p>

에 관한 사항은 「노인복지법」 제46조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8조, 제40조를 따른다.	조의2를 따른다.
--	-----------

12. 영동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영동군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 ----- ----- ----- ----- ----- ----- -----.

13. 영동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7조(자문) 수련관운영에 관한 주요사업은 영동군지방청소년위원회의 자문을 얻어야 한다.	제17조(자문) ----- ----- 「청소년 기본법」 제11조에 따른 영동군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제18조(위탁운영) 군수는 수련관 시설을 다음 각호의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제18조(위탁운영) 군수는 수련관 시설의 운영을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6조에 따라 청소년

<p>1. 「<u>청소년활동진흥법</u>」 제16조 <u>조에 따른 단체</u></p> <p>2. <u>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단체와 그 지방조직</u></p> <p>3. <u>정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의 지원을 받는 비영리법인·단체</u></p> <p>4. <u>수련시설을 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비영리법인·단체</u></p>	<p><u>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u></p> <p><삭 제></p> <p><삭 제></p> <p><삭 제></p> <p><삭 제></p>
---	---

14. 영동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현 행	개 정 안
<p>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u>다음</u>의 재원으로 조성한다.</p> <p>1. <u>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u></p> <p>2. 「<u>식품위생법</u>」(다음부터 “법”이라 한다) 제82조, 제83조 및 「<u>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u>」 제37조에 따라 징수한 <u>과징금</u></p> <p>3. <u>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u></p>	<p>제3조(기금의 조성) ----- <u>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9조제2항에 따른 ---.</u></p> <p><삭 제></p> <p><삭 제></p> <p><삭 제></p>

4. 그 밖에 「식품위생법 시행령」(다음부터 “영”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수입금

제3조의2(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영업자(「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자를 포함한다)의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용자 사업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 사업(소비자단체의 교육·홍보 지원을 포함한다)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활동 지원

3. 식품위생과 국민 영양에 관한 조사·연구 사업

4. 법 제90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지원

5.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연구 기관의 육성 및 지원

6. 음식문화의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지원

7. 집단급식소(위탁에 의하여

<삭 제>

제3조의2(기금의 용도) 기금은 법 제89조제3항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에 사용한다.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p><u>운영되는 집단급식소만 해당한다)의 급식시설 개수·보수를 위한 용자 사업</u></p>	
<p>8. <u>기금의 관리·운용에 수반되는 부대경비</u></p>	<p><삭 제></p>
<p>9. <u>그 밖에 식품위생, 주민영양, 식품산업 진흥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사업으로서 영 제61조에서 정하는 사업</u></p>	<p><삭 제></p>

15. 영동군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p>제7조(지원의 제한) 지원대상 위생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p> <p>1. (생 략)</p> <p>2. 「<u>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u>」 제5조 또는 제6조를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p> <p>3. ~ 5. (생 략)</p>	<p>제7조(지원의 제한) ----- ----- ----- -----.</p> <p>1. (현행과 같음)</p> <p>2. 「<u>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u>」 제5조 ----- ----- ----- --</p> <p>3. ~ 5. (현행과 같음)</p>

16. 영동군 보육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 4. (생략) 5. <u>어린이집 원장의 업무정지 및 보육교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u> 6.·7. (생략)	제4조(기능) ----- -----. 1. ~ 4. (현행과 같음) <u><삭 제></u> 6.·7. (현행과 같음)

17. 영동군 청사위치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조에 따라 영동군 청사 및 읍·면 청사위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9조----- ----- -----

18. 영동군 군세 징수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3조(군세의 수납) 영 제29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액 지방세”란 납세고지서 1매당 <u>세액(가산금을 제외한다)</u> 이 30만원 이하인 군세를 말한다.	제3조(군세의 수납) 영 제30조제1항제2호----- ----- ----- <u>세액</u> ----- -----.
제4조(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	제4조(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

<p>징수에 기여한 자”에 해당하는 경우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p> <p>가. (생략)</p> <p>나. 체납처분, 관허사업제한,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고발, 체납자 명단공개, 출국금지,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 제재 방법을 통하여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사람</p> <p>다·라. (생략)</p> <p>3. (생략)</p> <p>②·③ (생략)</p>	<p>-----</p> <p>-----</p> <p>-----</p> <p>가. (현행과 같음)</p> <p>나. -----</p> <p>「지방세기본법」-----</p> <p>-----</p> <p>-----</p> <p>-----</p> <p>-----</p> <p>-----</p> <p>-----</p> <p>다·라. (현행과 같음)</p> <p>3. (현행과 같음)</p> <p>②·③ (현행과 같음)</p>
--	--

20. 영동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현행	개정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영동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행업체의 평가체계 기반을 마련하고 자율적인 평가역량을 강화하여 청소행정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것</p>	<p>제1조(목적) -----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8항-----</p> <p>-----</p> <p>-----</p> <p>-----</p> <p>-----</p> <p>-----</p> <p>-----</p> <p>-----</p>

을 목적으로 한다.	-----.
------------	--------

21. 영동군 폐기물 관리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8조(수수료의 부과) ① <u>법 제14조제3항</u> 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5. (생략) ② (생략)	제18조(수수료의 부과) ① <u>법 제14조제5항</u> ----- ----- ----- -----. 1. ~ 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22. 영동군 공공하수도시설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동군이 설치한 공공하수도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하수도법」 제74조제3항에 따라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위하여 「하수도법」 제19조의2----- ----- -----.
제4조(수탁자 선정방법 등) 수탁자 선정기준·절차 등에 관한 사항과 수탁자의 위탁성과 평가방법·절차 등은 「공공하수도관리업무 수탁자 선정 및 위탁	제4조(수탁자 선정방법 등) ---- ----- ----- ----- 「공공하수도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성과 평가」(환경부 고시)를 따른다.	평가」----- -----.
----------------------	--------------------

23. 영동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p>제7조(특별교통수단등의 운영 기준) 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의4제1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은 <u>상시</u>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교통수단 외의 운행차량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p> <p>② ~ ⑤ (생략)</p>	<p>제7조(특별교통수단등의 운영 기준) ① ----- ----- ---- <u>제14조의3제1항</u>----- ----- <u>매일 24시간 운</u> <u>행하는</u> ----- -----.</p> <p>② ~ ⑤ (현행과 같음)</p>
<p>제8조(특별교통수단등의 운행지역) ① <u>영 제14조의4</u>에 따른 특별교통수단등의 운행지역은 다음 각 호의 지역으로 한다. 다만, 군수는 이용자 수요를 감안하여 영동군을 우선적으로 운행할 수 있다.</p> <p>1. (생략)</p> <p><u><신설></u></p> <p>2. 3. (생략)</p>	<p>제8조(특별교통수단등의 운행지역) ① <u>영 제14조의3</u>----- ----- -----.</p> <p>1. (현행과 같음)</p> <p>2. <u>영동군과 관할구역 경계를 접하는 시·군</u></p> <p>3. 4. (현행 제2호 및 제3호와 같음)</p>

<p>②·③ (생략)</p> <p>제10조(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법 제16조 및 영 제14조의5에 따라 이동지원 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p> <p>② ~ ④ (생략)</p> <p>⑤ 법 제16조 및 영 제14조의3에 따라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p> <p>⑥ 영 제14조의3에서 이동지원 센터를 위탁할 수 있는 조례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교통약자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관내 단체로 한다.</p> <p>⑦ (생략)</p>	<p>②·③ (현행과 같음)</p> <p>제10조(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 영 제14조의6----- -----.</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p>⑤ ----- 영 제14조의5----- ----- -----.</p> <p>⑥ 영 제14조의5----- ----- ----- -----.</p> <p>⑦ (현행과 같음)</p>
--	---

24. 영동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현행	개정안
<p>제4조(주차장 설치비용 보조) ① 「주차장법」 제21조의2제6항에 따라 주차장 설치비용을 보조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영동군 주차장 운영 조례」 제16조에 따라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은 제외한</p>	<p>제4조(주차장 설치비용 보조) ① 「주차장법」 제21조의2제7항----- ----- -----.</p>

<p>다.</p> <p>1. ~ 3. (생략)</p> <p>② (생략)</p> <p>③ 보조금의 보조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은 「영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p>	<p>--.</p> <p>1. ~ 3.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 -----.</p>
---	--

25. 영동군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현행	개정안
<p>제8조(점용료의 부과·징수) ① (생략)</p> <p>② 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할 때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를 할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징수하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해당 연도분은 도로점용허가를 할 때에, 그 이후의 연도분은 매 회계연도 시작 후 3개월 이내에 부과·징수한다. 다만,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은</p>	<p>제8조(점용료의 부과·징수)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 ----- ----- ----- ----- ----- ----- ----- -----</p>

<p>금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4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p> <p>③·④ (생략)</p>	<p>-----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5항 -----</p> <p>-----</p> <p>-----</p> <p>---.</p> <p>③·④ (현행과 같음)</p>
--	--

26. 영동군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시 「도로법」 제31조 및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 원인자에 대한 공사 시행명령의 기준과 공사 원인자 부담금의 부과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p> <p>-----</p> <p><u>제35조 및 제91조</u>-----</p> <p>-----</p> <p>-----</p> <p>-----</p> <p>-----</p> <p>-----.</p>

28. 영동군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p>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생략)</p> <p>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는 「영동군 공공디자인 조례」 제8조에 따라 설치된 영동군 공공디자인위원회에서 이를 대행</p>	<p>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현행과 같음)</p> <p>② -----</p> <p>-- 「영동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6조----- 지역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p>

한다.	----
-----	------

29. 영동군 체육진흥 조례

현행	개정안
제7조(체육회 등 운영비 보조) ① 군수는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영동군체육회, 영동군장애인체 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 부를 <u>보조할 수 있다.</u> 1. ~ 4. (생략) ② (생략)	제7조(체육회 등 운영비 보조) ① ----- ----- ----- ----- ---- <u>지원하여야 한다.</u> 1. ~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지역보건법」

제10조(보건소의 설치) ①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관리하기 위하여 시·군·구에 1개소의 보건소(보건의료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한다. 다만, 시·군·구의 인구가 30만 명을 초과하는 등 지역주민의 보건의료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② 동일한 시·군·구에 2개 이상의 보건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를 총괄하는 보건소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 ① 보건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기능 및 업무를 수행한다.

1. 건강 친화적인 지역사회 여건의 조성
2. 지역보건의료정책의 기획, 조사·연구 및 평가
3. 보건의료인 및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건의료기관 등에 대한 지도·관리·육성과 국민보건 향상을 위한 지도·관리
4.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5.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관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
 - 가. 국민건강증진·구강건강·영양관리사업 및 보건교육
 - 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 다.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유지·증진
 - 라. 여성·노인·장애인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건강유지·증진
 - 마. 정신건강증진 및 생명존중에 관한 사항
 - 바.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 등의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사. 가정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 및 건강
관리사업

아. 난임의 예방 및 관리

②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의료취약지의 보건소는 제
1항제5호아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건소 기능 및 업무 등에 관하여 필요
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보건지소의 설치)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보건소의 지소(이하 “보건지소”라 한
다)를 설치할 수 있다.

「지방회계법」

제44조(출납원) ① 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② 출납원은 법령, 조례 및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이나 물
품을 출납·보관하여야 한다.

③ 출납원은 수입대체경비 출납원,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등 출납
원,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 및 물품 출납원 등으로 구분한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9조의2(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비용)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노인
의료복지시설의 입소비용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장기요양급여수급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제18조제1항제1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자 :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가 전액 부담한다.

3. 제18조제1항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자 : 입소자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

제27조의2(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이용비용)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재가

노인복지시설의 이용비용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장기요양급여수급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제2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한다.
3. 제2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중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한다.
4. 제2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중 제2호 및 제3호 외의 자 : 이용자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제11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수련시설 설치·운영자는 수련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련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위탁 업무의 내용, 위탁 계약의 기간·조건·해지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위탁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련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은 청소년단체(이하 “위탁운영단체”라 한다)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위탁된 수련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위탁운영단체 및 그 대표자와 임원에 관하여는 제14조 및 제15조를 준용한다.

「식품위생법」

제89조(식품진흥기금) ① 식품위생과 국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시·도 및 시·군·구에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2. 제82조, 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3. 기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영업자(「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자를 포함한다)의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용자 사업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 사업(소비자단체의 교육·홍보 지원을 포함한다)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활동 지원
3. 식품위생과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른 영양관리(이하 “영양관리”라 한다)에 관한 조사·연구 사업
4. 제90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지원
- 4의2.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보상금(이 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관한 신고를 원인으로 한 보상금에 한정한다) 상환액의 지원
5.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연구 기관의 육성 및 지원
6. 음식문화의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지원
7. 집단급식소(위탁에 의하여 운영되는 집단급식소만 해당한다)의 급식시설 개수·보수를 위한 용자 사업
- 7의2. 제47조의2에 따른 식품접객업소의 위생등급 지정 사업 지원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위생, 영양관리, 식품산업 진흥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사업

④ 기금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관리·운용하되, 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폐기물관리법」

-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①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 ②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③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4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 처리 신고를 한 자(이하 “폐기물처리 신고자”라 한다)는 생활폐기물 중 폐지, 고철, 폐식용유(생활폐기물에 해당하는 폐식용유를 유출 우려가 없는 전용 탱크·용기로 수집·운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할 수 있다.
- ④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때에는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종류, 양 등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 종량제(從量制) 봉투 또는 폐기물임을 표시하는 표지 등(이하 “종량제 봉투등”으로 한다)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하되, 음식물류 폐기물의 경우에는 배출량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 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제5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하여 수수료를 부과·징수하려는 경우에는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 산정에 필요한 내용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 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량제 봉투등의 제작·유통·판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⑧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원가를 계산하여야 하며, 최초의 원가계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에서 규정하는 원가계산용역기관에 원가계산을 의뢰하여야 한다.
2.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주민 만족도와 환경미화원의 근로조건을 포함한다)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평가기준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행실적 평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전문가 등으로 평가단을 구성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3. 제2호에 따라 대행실적을 평가한 경우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평가일부터 6개월 이상 공개하여야 하며, 평가결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 대행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내용을 계약일부터 6개월 이상 해당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5. 제4호에 따른 대행계약이 만료된 경우에는 계약만료 후 6개월 이내에 대행비용 지출내역을 6개월 이상 해당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6.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법인의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행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 가. 「형법」 제133조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나. 「형법」 제347조, 제347조의2, 제356조 또는 제357조(제347조 및 제356조의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벌금형의 경우에는 300만원 이상에 한정한다.)

7.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 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과 관련하여 제6호 각 목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은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계약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4조의3(특별교통수단의 운영의 범위 및 운영방법) ① 법 제16조제6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특별교통수단의 구체적인 운영의 범위 및 운영방법을 정할 때 적용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시간은 매일 24시간으로 할 것
2.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의 범위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지역으로 할 것

가. 시(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군의 경우: 다음의 지역

1) 해당 시·군의 관할구역 안

2) 해당 시·군의 관할구역 밖의 지역 중 다음의 지역

가) 해당 시·군을 관할하는 도의 다른 시·군

나) 해당 시·군과 관할구역 경계를 접하는 시·군

다) 해당 시·군과 관할구역 경계를 접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라) 해당 시·군(관할구역 경계를 접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가 없는 시·군으로 한정한다)의 인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이 경우 해당 시·군의 조례로 1개 이상의 지역을 정해야 한다.

마) 그 밖에 생활권이나 지역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범위에 포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서 해당 시·군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

②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 외에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의 범위 및 운영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한 보조) ① 국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하여 체육 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지방장애인체육회,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윤리센터, 그 밖의 체육단체와 체육 과학 연구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나 연구비의 일부를 보조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영동군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 출 자	영 동 군 수
제출년월일	2024. 4. 9.

영동군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2024-22
----------	---------

제출년월일 : 2024. 4. 9.

제 출 자 : 영 동 군 수

1. 제안이유

- 영동군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교류 협력 등에 필요한 기준, 교류협력 사업의 범위 및 지원,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1조~제3조)
-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협력의 대상기준 및 체결에 따른 절차(안 제4조~제7조)
- 교류협력 사업의 범위 및 지원(안 제8조~제9조)
- 사후관리, 자매결연 등의 취소(안 제10조~제11조)

3. 근거법령 : 「지방자치법」 제13조, 제47조, 제193조,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제3조

- 첨 부
1. 영동군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 1부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
 3. 관계법령 1부. 끝.

영동군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동군과 국내·외 도시 간의 자매결연·우호교류협력을 확대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행정선진화를 통해 지역주민의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외 도시”란 국내의 지방자치단체와 외국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체를 실시하지 않는 국가의 행정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2. “자매결연”이란 영동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국내·외 도시 상호간에 인적·물적 교류는 물론 다양한 형태의 종합적인 교류활동을 목적으로 체결하는 협약을 말한다.
3. “우호교류협력”이란 제2호에 따른 자매결연 이전 단계의 협력관계로 군과 국내·외 도시 간의 상호교류 의사를 밝히는 협정서, 의향서 및 합의서 등의 체결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군과 국내·외 도시 간의 교류협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자매결연 및 우호교류협력의 대상기준) ① 영동군수(이하 “군

수”라 한다)는 국내·외 도시와의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협력(이하 “자매결연 등”이라 한다)의 체결을 제의하거나 제의를 받았을 경우 지역여건, 행정규모, 외교적 특수성과 교류의 적정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토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1. 면적, 인구 및 행·재정적 수준 등 지역여건의 유사성
2. 산업, 경제, 지역특성의 공통점 및 발전 가능성
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4. 교류협력을 통한 기대효과
5. 역사적, 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협력의 필요성
6. 그 밖에 교류협력의 적정성 등

제5조(사전교류)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자매결연 등의 적정성을 보다 정확하게 검토하기 위하여 의회, 관내 기관·단체 및 주민, 공무원 등을 상호 교환 초청하여 대상 지역의 여건을 비교 견학하는 등 사전 교류를 할 수 있다.

② 사전교류를 할 때에는 양 자치단체 또는 도시 간의 상호 이해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지역 여건 및 지역 실태를 소개하는 각종 자료 등의 교환을 통하여 바람직한 교류방향을 모색한다.

제6조(의회의결) ① 군수는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라 외국 지방

자치단체 및 도시와 자매결연 등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영동군의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군수는 국내 도시와 자매결연 등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자매결연 등의 체결) ① 자매결연 등은 군수와 국·내외 도시의 장이 서명하여 체결한다.

② 제1항의 자매결연 등을 체결할 때에는 군수와 국·내외 도시의 장이 공동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 기본사항에 대하여 합의문을 2부 작성하고 서명하여 각각 보관한다.

③ 상호 방문 시 경비부담은 상호 호혜주의에 입각하여 군수와 국·내외 도시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8조(교류협력 사업) ① 군수는 교류협력을 체결한 국내·외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활동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상호 이해 증진 및 행정발전을 위한 교류
2. 해외 수출시장 개척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교류
3. 문화, 예술, 체육,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
4. 세계화 의식 함양을 위한 청소년 교류
5. 그 밖에 교류협력 지방자치단체 간 상호 공동 관심사항 등

② 군수는 자매결연, 우호교류협력 도시 및 교류 가능한 국내·외 도시와의 교류촉진에 필요한 사업 등을 위하여 업무 관련부서에 예산

의 지원, 시설의 사용, 교통편의 제공 등을 할 수 있다.

제9조(민간부분 교류지원) 군수는 주민, 언론인, 각급 기관, 사회단체, 학교 등 민간부분에서 국내·외 도시와의 교류협력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교류협력 활동을 위한 상호 간 인력파견·양성
2. 교류협력 활동을 위한 상호 간 교육, 국내·외 연수 등
3. 교류협력 증진에 필요한 사업 추진을 위한 사항
4. 교류협력 도시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 참가

제10조(사후관리) 군수는 자매결연 등을 체결한 후 교류가 부진하거나 단절되지 않도록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교류를 추진하여야 한다.

제11조(자매결연 등의 취소) ① 군수는 자매결연 등을 체결한 후 국내·외 도시와의 교류 상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거나 교류 단절로 자매결연 등이 유명무실해진 경우, 또는 교류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매결연 등을 파기할 수 있다.

② 외국 지방자치단체 및 도시와의 자매결연 등을 파기할 때에는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체결된 국내·외 도시와의 자매
결연 및 우호교류협력은 이 조례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 본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 규정

- 「영동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2. 미첨부 사유

- “영동군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은 「영동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호에 따라 비용추계서의 제출 대상이 아님

3. 작성자 : 행정관광복지국 행정과장 성 세 제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6. 생략
7. 국제교류 및 협력
 - 가. 국제기구·행사·대회의 유치·지원
 - 나.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

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 9. 생략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
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93조(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외교·통상 정책과 배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제교류·협력, 통상·투자유치를 위하여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민간기관, 국제기구(국제연합과 그 산하기구·전문기구를 포함한 정부 간 기구, 지방자치단체 간 기구를 포함한 준정부 간 기구, 국제 비정부기구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교류협력의 범위) 법 제47조제1항제10호의 교류·협력은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친선결연 체결이나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으로 한다.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민과 농어촌주민 간의 상호 교류를 촉진하여 농어촌사회를 활성화하고, 자연환경과 전통문화 등 농어촌의 부존자원을 유지·발전시켜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도농교류 촉진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영동군 웰니스단지·힐링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영 동 군 수
제출년월일	2024. 4. 9.

영동군 웰니스단지 · 힐링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4-23
----------	---------

제출년월일 : 2024. 4. 9.
제 출 자 : 영 동 군 수

1. 제안이유

- 일라이트휴양빌리지 및 힐링센터의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상향하는 한편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입장료 일부를 지역상품권으로 환급하여 지역경제 선순환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힐링센터 입장료 인상 및 지역상품권 환급 조항 신설
(안 제5조제6항, 별표 1)

- [별표 1]

< 기존 입장료 >

(단위 : 원)

구 분		개 인	단 체
입장료	어 른	3,000	2,000
	노인 · 청소년 · 군인	2,000	
	어린이	1,000	

※ 영동군민 : 1,000원

< 변경 입장료 >

(단위 : 원)

구 분		개 인	단 체
입장료	어 른	10,000원	8,000원
	노인 · 청소년 · 군인 · 영동군민 영동군 고향사랑 기부금 기부자	7,000원	
	어린이	2,000원	

- 이용객에게 징수한 입장료의 일부를 영동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축제기간 등에 입장료 일부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 신설
(안 제5조제5항)
- 시설사용료 중 일라이트 휴양빌리지 가야금동 비수기 시설
사용료 변경 및 비수기 요금체계 중 “금·토요일, 공휴일” 을
“금·토요일, 공휴일 전일” 로 변경

- [별표 2]

< 기존 시설사용료 >

(단위: 원)

시설명		객실수	비수기		성수기	비 고
			평일	금·토요일, 공휴일		
일라이트 숙박동	가야금 (63㎡)	2실	70,000	120,000	150,000	1일/1실
	거문고, 아쟁, 해금, 대금, 단소, 피리, 태평소, 팽파리, 장구 (40㎡)	18실 (각2실)	55,000	85,000	120,000	1일/1실

< 변경 시설사용료 >

(단위: 원)

시설명		객실수	비수기		성수기	비 고
			평일	금·토요일, 공휴일 전일		
일라이트 휴양빌리지	가야금 (63㎡)	2실	85,000	120,000	150,000	1일/1실
	거문고, 아쟁, 해금, 대금, 단소, 피리, 태평소, 팽파리, 장구 (40㎡)	18실 (각2실)	55,000	85,000	120,000	1일/1실

3. 근거법령 : 「관광진흥법」 제67조, 제69조

- 첨 부
1. 영동군 웰니스단지·힐링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
 4. 관계법령 1부. 끝.

영동군 웰니스단지·힐링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동군 웰니스단지·힐링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숙박시설”을 “휴양빌리지, 바비큐장”으로 한다.

제4조제2항 단서 중 “숙박시설”을 “휴양빌리지”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관련 신분증(서류를 포함한다)을”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증명서(신분증 등)를”로, “경우에는”을 “경우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숙박시설을”을 “휴양빌리지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군수는 관광활성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입장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입장료 감면기간, 감면범위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⑥ 군수는 관광지 운영 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이용객에게 징수한 입장료의 일부를 영동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할 수 있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 제7호 중 “참전유공자예우”를 “참전유공자 예우”로 하고, 별표 3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별표 3 제12호를 삭제하고, 별표 3 제13

호 중 “만 18세”를 “18세”로 하며, 별표 3 제15호 중 “만 6세”를 “6세”로 한다.

8.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

부 칙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힐링센터 입장료(제5조제1항 관련)

구 분		개 인	단 체
입장료	어 른	10,000원	8,000원
	노인·청소년·군인·영동군민 영동군 고향사랑 기부금 기부자	7,000원	
	어린이	2,000원	

1. 어린이: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자(초등학생 포함)
2. 청소년: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자(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 포함)
3. 군인: 신분증이나 휴가증을 소지한 병장 이하의 군인(의무경찰, 경비교도 대원, 상근예비역, 사회복지무요원 포함)
4. 어른: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자
5. 노인: 65세 이상인 자
6. 단체: 동일한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20명 이상의 일행
7. 영동군민: 주민등록상 주소를 영동군에 둔 사람
8. 영동군 고향사랑 기부금 기부자: 영동군에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부한 사람

[별표 2]

시설 사용료(제5조제1항, 제4항 관련)

(단위 : 원)

시설명		객실수	비수기		성수기	비 고
			평일	금·토요일, 공휴일 전일		
일라이트 휴양빌리지	가야금 (63m ²)	2실	85,000	120,000	150,000	1일/1실
	거문고, 아쟁, 해금, 대금, 단소, 피리, 태평소, 팽과리, 장구 (40m ²)	18실 (각 2실)	55,000	85,000	120,000	1일/1실

1. 일라이트 휴양빌리지의 1일 기준은 입실일(check-in) 15:00부터 다음날 (check-out) 11:00까지로 한다.
2. 성수기는 매년 7월, 8월, 비수기는 그 외의 기간을 말한다.
3. 퇴실이 지체될 경우 다음과 같은 금액을 추가 징수한다.
 - 가. 2시간 이하 지체: 시설사용료의 30%
 - 나. 3시간 이하 지체: 시설사용료의 50%
 - 다. 3시간 초과 지체: 시설사용료의 100%
4. 1실 기준인원은 다음과 같다.
 - 가. 가야금 : 6인
 - 나. 거문고, 아쟁, 해금, 대금, 단소, 피리, 태평소, 팽과리, 장구 : 3인
5. 침구는 가야금 6조, 거문고 외 8동은 3조가 기본 제공되며 기준인원 초과(최대 2명) 시 추가요금(1조/1일 10,000원)을 징수한다.
6. 바비큐장의 사용료는 동당 최대 3만원 내에서 군수가 정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설치) ① (생 략)</p> <p>② 웰니스단지의 주요시설은 산약초 자원센터, 숲에너지 육감활성화센터, 일라이트 <u>숙박시설</u> 등으로 한다.</p> <p>③ (생 략)</p> <p>제4조(개방일 및 운영시간) ① (생 략)</p> <p>② 웰니스단지등의 운영시간은 10:00 ~ 18:00로 한다. 다만, 일라이트 <u>숙박시설</u>의 운영시간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p> <p>③ · ④ (생 략)</p> <p>제5조(입장료 등) ① · ② (생 략)</p> <p>③ 군수는 별표 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u>관련 신분증(서류를 포함한다)</u>을 보여 줄 <u>경우에는</u> 그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다.</p> <p>④ 군수는 주민등록상 주소를 영동군에 둔 사람이 일라이트 <u>숙박시설</u>을 이용하는 경우 사용료의 2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p>	<p>제2조(설치)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u>휴양빌리</u> <u>지, 바비큐장</u> -----.</p> <p>③ (현행과 같음)</p> <p>제4조(개방일 및 운영시간)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u>휴양빌리지</u>----- -----.</p> <p>③ · ④ (현행과 같음)</p> <p>제5조(입장료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 ----- <u>이</u> <u>확인할 수 있는 관련 증명서(신</u> <u>분증 등)</u>를 ----- <u>경우에</u> - -----.</p> <p>④ ----- ----- <u>휴양빌리지를</u> ----- -----.</p>

다.

<신 설>

<신 설>

--.

⑤ 군수는 관광활성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입장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입장료 감면기간, 감면범위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⑥ 군수는 관광지 운영 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이용객에게 징수한 입장료의 일부를 영동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할 수 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 규정

- 「영동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2. 미첨부 사유

- “영동군 웰니스단지·힐링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영동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3호에 따라 비용추계서의 제출 대상이 아님

3. 작성자 : 행정관광복지국 관광과장 박종화

「관광진흥법」

제67조(입장료 등의 징수와 사용) ①관광지등에서 조성사업을 하거나 건축, 그 밖의 시설을 한 자는 관광지등에 입장하는 자로부터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고, 관광시설을 관람하거나 이용하는 자로부터 관람료나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입장료·관람료 또는 이용료의 징수 대상의 범위와 그 금액은 관광지등이 소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입장료·관람료 또는 이용료를 징수하면 이를 관광지등의 보존·관리와 그 개발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여야 한다.

제69조(관광지등의 관리) ①사업시행자는 관광지등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사업시행자는 필요하면 관광사업자 단체 등에 관광지등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 대상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7조에 따라 등록이 된 자(이하 “5·18민주유공자”라 한다)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1. 5·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또는 5·18민주화운동으로 인한 상이(질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후유증으로 사망한 사람으로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을 받은 사람

2. 5·18민주화운동부상자: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5항에 따른 장애등급(이하 “장애등급”이라 한다)의 판정을 받고 보상을 받은 사람

3.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희생자: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사람

영동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영 동 군 수
제출년월일	2024. 4. 9.

영동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4-24
----------	---------

제출년월일 : 2024. 4. 9.

제 출 자 : 영 동 군 수

1. 제안이유

- 영동문학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개관일, 휴관일 등을 정비하고, 관장 및 명예관장, 관람제한, 시설대관, 손해 배상에 관한 사항 등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관장 및 명예관장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5조)
- 개관일 및 휴관일, 관람시간에 관한 사항(안 제6조, 안 제7조)
 - 공휴일과 매주 토요일 → 1월 1일, 설·추석 연휴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의 다음날
- 관람제한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9조)
- 일부 시설의 대관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6조~안 제22조)

3. 근거법령 : 「문학진흥법」 제3조, 제19조

- 첨 부
1. 영동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
 3. 관계법령 1부. 끝.

영동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영동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영동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학진흥법」 제19조에 따라 영동군의 문학정신을 창조적으로 계승하여 영동문학사를 정립하고 영동군의 문학 발전에 이바지할 영동문학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영동문학관의 설치 및 위치) ①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영동군의 문학 발전을 위해 영동문학관(이하 “문학관”이라 한다)을 설치 및 운영한다.

② 문학관은 영동군 심천면 국악로 18 일원에 두며, 그 시설은 일반전시실, 기획전시실, 공연장, 세미나실, 수장고 및 그 외 부대시설로 한다.

제3조(사업) 문학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문학 자료의 수집·전시
2. 소장품의 보관·관리

3. 문학 자료에 대한 학술적 조사·연구 및 문학 창작 활동 지원

4. 문학관 관리·운영

5. 그 밖에 문학발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운영) 군수는 문학관을 직접 관리·운영한다. 다만, 문학관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관장) ① 문학관에 관장을 두며, 관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문학관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관장은 문학관 업무 담당 부서장이 겸직하되,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를 채용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문학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문학에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사람을 명예관장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명예관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사고 및 질병, 기타의 사유로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⑤ 명예관장은 문학관 운영방향 및 주요사업계획, 연구 활동, 문학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이에 필요한 활동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 또는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개관 및 휴관) ① 문학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연중 개관한다.

1. 1월 1일

2. 설날·추석 연휴

3.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의 다음날.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공휴일의 다음날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휴관일

제7조(관람시간) 문학관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군수가 문학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8조(관람료) 문학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제9조(관람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문학관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1. 술 또는 약물에 취한 사람

2. 전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

3. 위험물이나 악취를 발산하는 물품 등을 소지하여 다른 관람자에게 위해(危害)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4.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6세 이하의 어린이

5. 문학관의 전시품 등 시설을 훼손하거나 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람

6. 그 밖에 군수가 문학관의 관람 질서 유지를 위해 관람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제10조(자료의 취득 및 관리) ① 군수는 문학관에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구입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문학관 자료로서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료를 기증받을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문학관 자료 수집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1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문학관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정·자문·심의하기 위하여 영동문학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문학관의 주요사업 및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
2. 다른 문학관 및 각종 문화 시설·단체와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3. 문학 자료의 자문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문학관 운영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문학관 업무담당 부서의 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영동작가회, 영동문인협회에 소속된 사람
2. 문학관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문학관과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의 전문가
4. 문학 관련 기관·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5. 그 밖에 군수가 문학관 운영에 관한 심의·자문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3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
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
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위원회 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의 요청이 있거나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
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문학관 업무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문학관 업무 담당자가 된다.

제16조(대관허가) ① 군수는 문학관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문
학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시·행사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
대관을 허가할 수 있다.

1. 공연장
2. 기획전시실
3. 세미나실

② 제1항에 따른 대관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사용예정일 14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대관허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

는 별지 제2호서식의 대관허가 신청 접수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문학관의 운영상 특별한 문제가 없는 시설에 대한 대관허가의 경우에는 신청기한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군수는 이를 허가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대관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7조(대관시간) 시설 대관시간은 제7조에 따른 관람시간 이내로 한다. 다만, 대관 허가 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람시간 이후에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대관료) ① 제16조에 따라 대관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별표에 따른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납부된 대관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으로 대관시설 사용이 취소되거나 정지되었을 때
2. 신청인이 사용예정일 전날까지 대관허가의 취소를 서면으로 신청한 때

제19조(대관료의 감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대관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군 또는 제4조에 따른 수탁자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나 사업에 사용될 경우 : 전액 면제
2. 군 또는 제4조에 따른 수탁자가 후원 또는 협찬하는 행사나 사업에

사용될 경우 : 50% 감면

제20조(대관허가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특정 종교의 선교·포교 및 정치적 목적의 행사
2. 문학관의 시설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제21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대관허가 취소 또는 사용 정지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자가 대관신청을 하는 경우
4. 제23조에 따른 손해배상이나 원상 복구를 하지 아니한 자가 대관을 신청하는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문학관 관리 및 운영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1조(대관허가의 취소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허가를 취소하거나 장소 사용을 제한 또는 정지시킬 수 있다.

1. 대관허가의 내용과 상이한 전시나 행사의 경우
2. 제18조에 따른 대관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으로 대관시설의 사용이 불가능 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22조(대관자의 준수사항) ① 대관자는 대관기간 중 문학관의 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대관 행사에 따른 전시물 등의 관리는 대관자의 모든 책임 하에 관리하여야 한다.

② 대관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23조(손해배상 등) 군수는 관람자, 대관자, 수탁자 등이 문학관의 시설
등을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
하게 하거나 원상 복구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영동문학관 시설 대관료(제18조제1항 관련)

구 분	단위	이용료(원)	비 고
공 연 장	1일	50,000	·오전 : 09:00 ~ 12:00 ·오후 : 13:00 ~ 18:00 ·1일 : 09:00 ~ 18:00
기획전시실	1일	50,000	
세미나실	오전	20,000	
	오후	30,000	
	1일	50,000	

영동문학관 대관허가서

대 관 자	성 명 (단체명)	
	주 소 (소재지)	
대관일시 (기간)		
대관시설		
대관목적		
대 관 료	원 / 무료 ()	
기타사항		
<p>「영동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관허가하오니 허가 조건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p> <p>첨부 : 허가조건 1부.</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영 동 군 수</p>		

허 가 조 건

1. 대관자는 「영동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2. 대관허가를 받은 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합니다.
3. 대관기간 중 문학관의 설비, 시설, 비품을 파손, 분실하였을 때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대관완료시 대관 전과 같이 정돈하여야 합니다.
4. 대관 시설물에 시설물의 추가설치 또는 시설물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반드시 영동군수의 허가를 받은 후 변경하여야 하며, 대관종료와 동시에 원상 복구하여야 합니다.
5. 「영동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8조제2항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납입된 대관료를 반환하지 않습니다.
6. 대관료는 지정된 기일까지 납입고지서에 표기된 금융기관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7. 대관자는 시설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쓰레기를 대관종료와 동시에 모두 수거하여 처리하여야 합니다.
8. 위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에는 대관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 규정

- 「영동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2. 미첨부 사유

- “영동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영동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호에 따라 비용추계서의 제출 대상이 아님

3. 작성자 : 행정관광복지국 국악문화예술과장 김 상 식

「문학진흥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문학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고, 문학 창작 및 향유와 관련한 국민의 활동을 증진함으로써 문학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학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문학 창작 및 향유와 관련한 국민의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문학 진흥 시책은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생활 문화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되는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공립문학관 설립과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의 문학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공립문학관을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립문학관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영동군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영 동 군 수
제출년월일	2024. 4. 9.

영동군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4-25
----------	---------

제출년월일 : 2024. 4. 9.

제 출 자 : 영 동 군 수

1. 제안이유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영동군 지명위원회 조례」의 세부규정에 관한 사항 개정
(대통령령 제33525호, 2023.6.9.일부개정, 2023.6.11.시행)

2. 주요내용

- 상위법령 인용조문 변경(안 제1조)
- 영동군 지명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에 따라 개정
(안 제3조)
 - 1) (전체 구성인원) 7인 이내 ⇒ 10명 이내
 - 2) 전체 위원 중 민간위원의 수를 6인 이내로 규정
- 지명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5조)

3. 근거법령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 ~ 제96조

- 첨 부 1. 영동군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
3. 관계법령 1부. 끝.

영동군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영동군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영동군 지명위원회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에 따라 영동군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영동군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지명의 제정·변경 및 폐지
2. 결정된 지명에 대한 재심의 청구
3. 관할구역 내의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수집과 분석
4.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중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은 6명 이내로 한다.

② 위원장은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지명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지적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지명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충청북도 지명위원회의 위촉위원을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여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하게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를 회신과 서면심의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지명의 조사) ① 제2조에 따른 지명의 조사는 법정·행정 지명을 포함한 자연 지명, 지표물 지명 등 모든 지명을 조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과정

을 포함하여 지명 중 복합 호칭되고 있는 지명이나 명칭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기본도상의 표기오류 지명을 조사한다.

③ 행정구역의 경계 상에 위치한 지명 등을 조사할 때에는 이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 또는 지명위원회 위원과 공동으로 조사할 수 있으며, 지명 등을 공동 조사할 경우에 상급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에 직접 참여 할 수 있다.

제7조(간사와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씩 두되, 간사는 영동군 소속 공무원 중 위원장이 임명하고 서기는 지명업무 담당자가 된다.

제8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그 밖에 중요한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 규정

- 「영동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2. 미첨부 사유

- “영동군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은 「영동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라 비용추계서의 제출 대상이 아님

3. 작성자 : 행정관광복지국 국악문화예술과장 김 상 식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국가지명위원회 등의 설치) ① 지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국가지명위원회를 둔다.

1. 지명의 제정·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지명 관련 법령, 제도 및 정책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관할 지역의 지명의 제정·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시·도에 시·도 지명위원회를 두고, 시·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시·군·구 지명위원회를 둔다.

③ 국가지명위원회, 시·도 지명위원회 및 시·군·구 지명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④ 국가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시·도 지명위원회와 시·군·구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의2(시·군·구 지명위원회의 구성 등) 시·군·구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시·군·구 지명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은 6명 이내로 위촉할 것
2. 시·군·구 지명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고,

- 부위원장은 지명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으로 할 것
- 3. 시·군·구 지명위원회의 민간위원은 지명에 관하여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위촉할 것
- 4. 시·군·구 지명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원에 대한 해촉 사유를 정할 것
- 5. 시·군·구 지명위원회의 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 등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것

제89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국가지명위원회, 시·도 지명위원회 및 시·군·구 지명위원회(이하 “지명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해당 지명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지명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0조(회의) ① 위원장은 지명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지명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1조(간사) ① 지명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국가지명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고, 시·도 지명위원회 및 시·군·구 지명위원회에는 각각 간사 1명을 둔다.

② 국가지명위원회의 간사는 국토지리정보원의 지명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고, 시·도 지명위원회 및 시·군·구 지명위원회의 간사는 해당 시·도 또는 시·군·자치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각각 임명한다.

제92조(수당 등) ① 국가지명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이나 제93조에 따라 출석한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도 지명위원회 및 시·군·구 지명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시·도 또는 시·군·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3조(현장조사 등) 지명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명의 제정, 변경, 폐지에 관한 사항과 그 밖의 지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련 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나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4조(회의록) 지명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96조(운영세칙) 지명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영동부용 고령자복지주택
노인여가복지시설(노인교실)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제 출 자	영 동 군 수
제출년월일	2024. 4. 9.

영동부용 고령자복지주택 노인여가복지시설(노인교실)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2024-26
----------	---------

제출년월일 : 2024. 4. 9.

제 출 자 : 영 동 군 수

1. 제안이유

- 노인여가복지시설(노인교실)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법인에 민간위탁하여 안정적 시설관리와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영동부용 고령자복지주택 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교실) 관리운영

나. 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 위탁 추진근거 : 관련법령 참고
- 위탁 추진 필요성 : 노인의 교양·취미생활, 건강증진, 사회 참여활동, 그 밖의 복지 증진에 필요한 편의 서비스를 체계적인 위탁 운영을 통해 제공하기 위함

다. 위탁사무 내용 : 시설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 등 운영 전반

- 노인여가복지시설(노인교실) 사업 수행 등 복지사업
- 시설 부대시설의 운영 및 안전관리 등

라. 위탁시설 개요

- 위 치 : 영동군 영동읍 학산영동로 1190-12, 1층(101동, 102동)
- 시설면적 : 1,505.03㎡ (※세부 시설별 면적 : 붙임 참조)
- 인력운영계획 : 4명(시설장1, 강사1, 기간제근로자2)

마. 위탁기간

- 2024. 6. 1. ~ 2028. 12. 31.(4년 7개월)

바.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222,234천원(군비 100%)

※민간위탁 초기운영비 1회 추경 편성 : 101,036천원

- 산출근거 : 붙임 참조

사. 수탁자 자격 및 선정방식

- 수탁자격 :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 선정방식 : 공개모집 후 수탁자 선정위원회 심의 선정

3. 참고자료

- 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추진계획안 1부.

- 관련법령 1부. 끝.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 8. 4.>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설의 설치·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

<개정 2011. 8. 4., 2012. 1. 26., 2016. 2. 3., 2017. 10. 24.>

1. 제40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부터 제1호의8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그 개인이 임원인 법인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 15.>

④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1. 8. 4., 2019. 1. 15.>

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 8. 4., 2012. 1. 26., 2019. 1. 15.>

⑥ 제5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8. 4., 2012. 1. 26., 2019. 1. 15.>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①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따라 수탁하는 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을 선정해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08. 11. 5., 2012. 8. 3., 2019. 6. 12., 2020. 1. 3.>

②제1항에 따른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해당 시설을 설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에 수탁자선정 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 11. 5., 2020. 1. 3.>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간 균형 분포 및 제27조의2에 따른 평가결과(평가를 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 11. 5., 2020. 1. 3.>

④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개정 2007. 3. 7., 2008. 11. 5., 2020. 1. 3.>

1.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위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⑤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제4항 및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탁기관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20. 1. 3.>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개정 2004. 9. 6., 2012. 8. 3., 2019. 6. 12.>

1. 수탁자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의 이름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5의2.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7.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04. 9. 6., 2012. 8. 3., 2016. 8. 3.>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탁자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신설 2016. 8. 3.>

1. 제1항에 따른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
2.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의회동의)

① 군수는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시작 60일 전까지 영동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재위탁과 기존 수탁자와 기간갱신을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군의회에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
5. 민간위탁 기간
6. 수탁자 선정방식
7. 소요예산

영동부용 고령자복지주택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제5조(운영) 노인여가복지시설은 군수가 운영한다. 다만, 노인여가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위탁 운영할 수 있다.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 출 자	영 동 군 수
제출년월일	2024. 4. 9.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안 번호	2024-27
----------	---------

제출년월일 : 2024. 4. 9.

제 출 자 : 영 동 군 수

영동 일라이트 클러스터 구축사업(변경)

1. 제안이유

-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된 ‘일라이트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과 관련 4단계 지역균형발전 미래신성장동력사업 확정 (2021. 12.) 및 ‘23년 제3차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결과 반영됨에 사업계획 변경
(사업명 : 영동 일라이트 클러스터 구축 / 대상사업 : 일라이트 지식산업센터 건립, 고순도 일라이트 지원시스템 구축)
- 사업계획 변경사유
기존 일라이트 지식산업센터 건립 공사 진행 중 추가 신규 사업인 고순도 일라이트 지원시스템 구축을 동시 추진함에 따라 사업비 변경

2. 주요내용

(기존) [일라이트 지식산업센터 건립]

- 위 치 : 영동군 용산면 한곡리 558(영동산업단지 내)
- 사업기간 : 2021. ~ 2024.
- 사업규모 : 부지 15,889.4㎡, 건축연면적 6,338㎡(지하1층/지상4층)
- 사 업 비 : (당초) 15,000백만원(국비 9,800, 도비 2,600, 군비 2,600)
(변경) 23,057백만원(국비 11,978, 도비 3,607, 군비 8,012)
- 변경사유 : 물가상승으로 인한 건설공사비지수(건설공사에 투입되는 재료, 노무, 장비, 자원 등의 직접공사비) 상승_중기부변경승인(23.3.21.)
- 사업내용 : 일라이트 소재 기업 임대형 공장, 공동시설 구축 등

(추가) [고순도 일라이트 지원시스템 구축]

- 위치 : 영동군 용산면 한곡리 558 (지식산업센터 동일부지)
- 사업기간 : 2024. ~ 2026.
- 사업규모 : 부지 15,889.4㎡, 건축연면적 1,551㎡(지상1층)
/ 가공 및 시험분석 장비 구축(35종)
- 사업비 : 8,100백만원(도비 3,905, 군비 4,195)
- 사업내용
 - 고순도 일라이트 지원센터 건립(지상1층 1동, 연면적1,551㎡)
 - 분쇄기기(15종), 기초실험용품(10종), 분석기기(7종), 기타(3종) 장비 구축
- ※ 4단계 지역균형발전 미래신성장동력사업 확정(2021. 12.)

3. 편입토지 현황

재산의 표시				소유자	토지이용계획	비고
소재지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용산면 한곡리 558	공장용지	15,889.4㎡	15,889.4㎡	영동군	도시지역, 일반공업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일반산업단지,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4. 예산상황 (총사업비 : 31,157백만원)

(기존) [일라이트 지식산업센터 건립]

- 사업비 : 23,057백만원 (국비 11,978, 도비 3,607, 군비 8,012)
-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백만원)

구분	총사업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계	23,057	300	2,433	3,617	9,383	7,324
국비	11,978		1,000	750	7,683	2,545
도비	3,067	300	1,000	1,000	200	567
군비	8,012		433	1,867	1,500	4,212

(추가) [고순도 일라이트 지원시스템 구축]

- 사업비 : 8,100백만원 (도비 3,905, 군비 4,195)
-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4년	2025년	2026년
계	8,100	364	700	4,936	2,100
도비	3,905	200	385	2,715	605
군비	4,195	164	315	2,221	1,495

○세부사업별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구분	사업비	비고
총계	8,100	
시설비	3,900	- 건축 : 1,551㎡ × 1,560,616원 - 기계 : 1,551㎡ × 172,165원 - 전기 : 1,551㎡ × 322,888원 - 통신 : 1,551㎡ × 77,246원 - 소방 : 1,551㎡ × 45,338원 - 토목 : 1,551㎡ × 223,778원 - 조경 : 1,551㎡ × 92,761원
설계 및 감리	200	- 기본 및 실시설계 : 3,869백만원 × 3.53% - 공사감리비 : 3,869백만원 × 0.97% - 시설부대비 : 25백만원
토지비	-	- 기존 사업(일라이트 지식산업센터 건립)에 포함 *영동군 공유지
장비구축비	4,000	- 분쇄, 분석기기, 기초실험용품 등

5. 추진경과

- 2021. 10월 :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 완료
- 2021. 12월 : 4단계 지역균형발전 미래신성장동력사업 확정
- 2022. 3월 : 일라이트 지식산업센터 건립공사 착공
- 2023. 4월 : 일라이트 가공시스템 구축(지식산업센터 연계 운영) 타당성 조사 용역
- 2023. 8월 :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조건부 승인

6.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 (공유재산 관리계획)

7. 향후계획

- 2024. 4월 :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회 심의·의결
- 2024. 4월 ~ 12월 : 고순도 일라이트 지원센터 기본 및 실시설계 추진
- 2024. 9월 : 2024년 제2회 추경예산 편성
- 2024. 12월 : 일라이트 지식산업센터 건립공사 준공
- 2025. 3월 : 일라이트 고순도 지원센터 착공
- 2025. 6월 ~ 12월 : 일라이트 가공 및 시험분석 장비 구입
- 2026. 6월 : 일라이트 고순도 지원센터 준공

붙임 : 위치도 및 조감도 1부.

붙임1

위치도 및 조감도

□ 위치도



□ 조감도

○ 일라이트 지식산업센터



○고순도 일라이트 지원센터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영동 종합관광 안내 정보센터 건립

1. 제안이유

- 영동 관광지에 대한 관광정보체계 구축, 영동군 관광 컨트롤 타워 역할, 레인보우 힐링관광지 체계적인 관리·홍보, 지역 문화축제 지원을 위한 관광기반시설인 “영동 종합관광 안내 정보센터” 건립이 시급

2. 주요내용

- 위 치 : 영동군 영동읍 매천리 160-2번지 일원
- 사업기간 : 2024. ~ 2025.
- 사업규모 : 부지 3,081㎡, 건축연면적 2,100㎡(지하1층/지상3층)
- 사 업 비 : 10,000백만원(한수원협력금 6,380, 군비 3,620)
- 사업내용 : 관광안내정보센터, 홍보실, 관제실, 사무실 등
 - 지하1층 : 기계/전기실 등
 - 지상1층 : 영동 관광홍보관, 한수원홍보관, 매표소, 안내센터, 관광안내사 사무실
 - 지상2층 : 관광재단 사무실, 운영팀 사무실, 대회의실, 창고, 휴게실
 - 지상3층 : 3D 체험 전시실

3. 편입토지 현황

재산의 표시				소유자	토지이용계획	비고
소재지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9개 필지		10,181	3,081			
영동읍 매천리 159	전	681	2	영동군	관광지, 계획관리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역개발사업구역	
영동읍 매천리 161	답	1,045	279	〃	〃	
영동읍 매천리 165	답	2,959	277	〃	〃	
영동읍 매천리 545	도로	341	30	〃	〃	
영동읍 매천리 546	구거	1,635	271	〃	〃	
영동읍 매천리 155-4	전	1,259	920	〃	〃	
영동읍 매천리 157-2	답	688	124	〃	〃	
영동읍 매천리 160-1	임야	737	352	〃	〃	
영동읍 매천리 160-2	답	836	826	〃	〃	

4. 예산상황

- 총사업비 : 10,000백만원 (한수원협력금 6,380, 군비 3,620)
-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계	10,000	0	5,880	4,120	0	0
한수원협력금	6,380		3,380	3,000		
군비	3,620		2,500	1,120		

○ 세부사업별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구분	사업비	비고																														
총계	10,000																															
시설비	7,600	- 공사비: 7,000백만원 = 2,100㎡ × 3,339천원/㎡ - 공종별 사업비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20px;"> <thead> <tr> <th>구분</th> <th>건축</th> <th>기계</th> <th>전기</th> <th>통신</th> </tr> </thead> <tbody> <tr> <td>비율</td> <td>61.79%</td> <td>7.23%</td> <td>15.46%</td> <td>5.74%</td> </tr> <tr> <td>사업비</td> <td>4,325</td> <td>506</td> <td>1,082</td> <td>402</td> </tr> <tr> <th>구분</th> <th>소방</th> <th>토목</th> <th>조경</th> <th>합계</th> </tr> <tr> <td>비율</td> <td>4.79%</td> <td>3.66%</td> <td>1.34%</td> <td>100%</td> </tr> <tr> <td>사업비</td> <td>335</td> <td>256</td> <td>94</td> <td>7,000</td> </tr> </tbody> </table>	구분	건축	기계	전기	통신	비율	61.79%	7.23%	15.46%	5.74%	사업비	4,325	506	1,082	402	구분	소방	토목	조경	합계	비율	4.79%	3.66%	1.34%	100%	사업비	335	256	94	7,000
구분	건축	기계	전기	통신																												
비율	61.79%	7.23%	15.46%	5.74%																												
사업비	4,325	506	1,082	402																												
구분	소방	토목	조경	합계																												
비율	4.79%	3.66%	1.34%	100%																												
사업비	335	256	94	7,000																												
설계 및 감리	1,700	- 전시설비 600백만원 = 300㎡ × 2,000천원/㎡ 설계비: 301백만원 = 7,000백만원 × 4.30% 감리비: 74백만원 = 7,000백만원 × 1.06% 시설부대비: 18백만원 = 7,000백만원 × 0.26% BIM: 344백만원 = 7,000백만원 × 4.92% 인증비: 963백만원 = 7,000백만원 × 13.75%																														
토지비	700	- 보상비 700백만원 = 3,081㎡ × 22,800원/㎡																														

5. 추진경과

- 2023. 12월 : 사업비 확보(한수원 지역발전 상생협력금 협약 체결)
- 2024. 1월 :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 완료

6.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공유재산의 관리계획)
-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7. 향후계획

- 2024. 4월 :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회 심의·의결
- 2024. 5월 : 2024년 제1회 추경예산 편성
- 2024. 5월 ~ 10월 : 기본 및 실시설계 추진
- 2024. 11월 : 건립공사 착공
- 2025. 12월 : 건립공사 준공

붙임 : 위치도 및 지적도 1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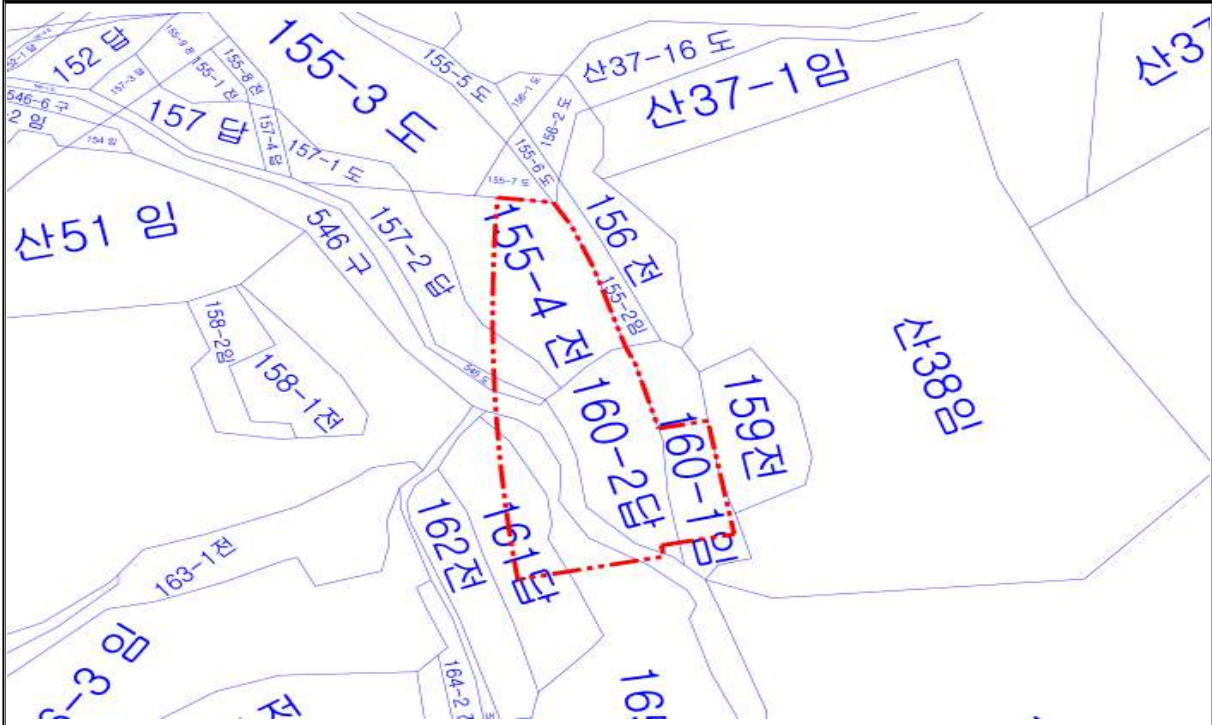
붙임1

위치도 및 지적도

□ 위치도



□ 지적도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생활폐기물 다목적 선별 및 보관시설 구축

1. 제안이유

- 영동군 자원순환센터 재활용 선별장 공간이 협소함에 따라 생활폐기물 다목적 선별 및 보관시설을 조성하여 대형폐기물 및 재활용품을 선별·보관하고자 함.
- 재난재해 시 금강 상류인 영동군에 발생하는 금강수계 수해 쓰레기 임시야적 및 선별장소로 활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위 치 : 영동군 용산면 율리 854, 854-3
- 사업기간 : 2024. 1. ~ 2025. 12.
- 사업규모 : 부지 2,959㎡, 선별장(991㎡) 1식
- 사 업 비 : 1,550백만원(부지매입: 450, 시설비: 1,100)
〈부지매입 : 450백만원(군비), 시설비 : 1,100백만원(기금70%, 군비30%)〉
※ 2024년 금강수계 특별기금사업 공모를 통하여 확보추진
- 사업내용 : 부지매입, 선별장 설치

3. 매입예정 부지현황

재산의 표시				소유자	토지이용계획	비고
소재지	지목	공부면적 (㎡)	편입면적 (㎡)			
용산면 율리 854	전	1,118	1,118	김달호	계획관리지역, 가축사 육제한구역, 접도구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용산면 율리 854-3	전	1,841	1,841	김달호		

4. 예산현황

○ 총사업비 : 1,550백만원(부지매입: 450, 시설비: 1,100)

○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4년	2025년
계	1,550		450	1,100
기금	770		0	770
군비	780		450	330

○ 세부사업별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구분	사업비	비고
총계	1,550	
부지매입	450	-부지매입 : 322백만원 -지장물보상 : 118백만원 -영농보상 : 10백만원
설계비	60	-설계비 : 40백만원 -감리비 : 20백만원
공사비	1,040	-토목공사비 : 200백만원 -건축공사비 : 840백만원

5.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공유재산의 관리계획)
-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7. 향후계획

- 2024. 4월 :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회 심의·의결
- 2024. 5월 : 2024년 제1회 추경예산 편성
- 2024. 6월 : 토지보상 완료
- 2024. 8월 ~ 12월 : 예산확보를 위한 공모사업(수계특별기금)
- 2025. 1월 ~ 12월 : 설계 및 시설 준공

붙임 : 위치도 및 지적도 1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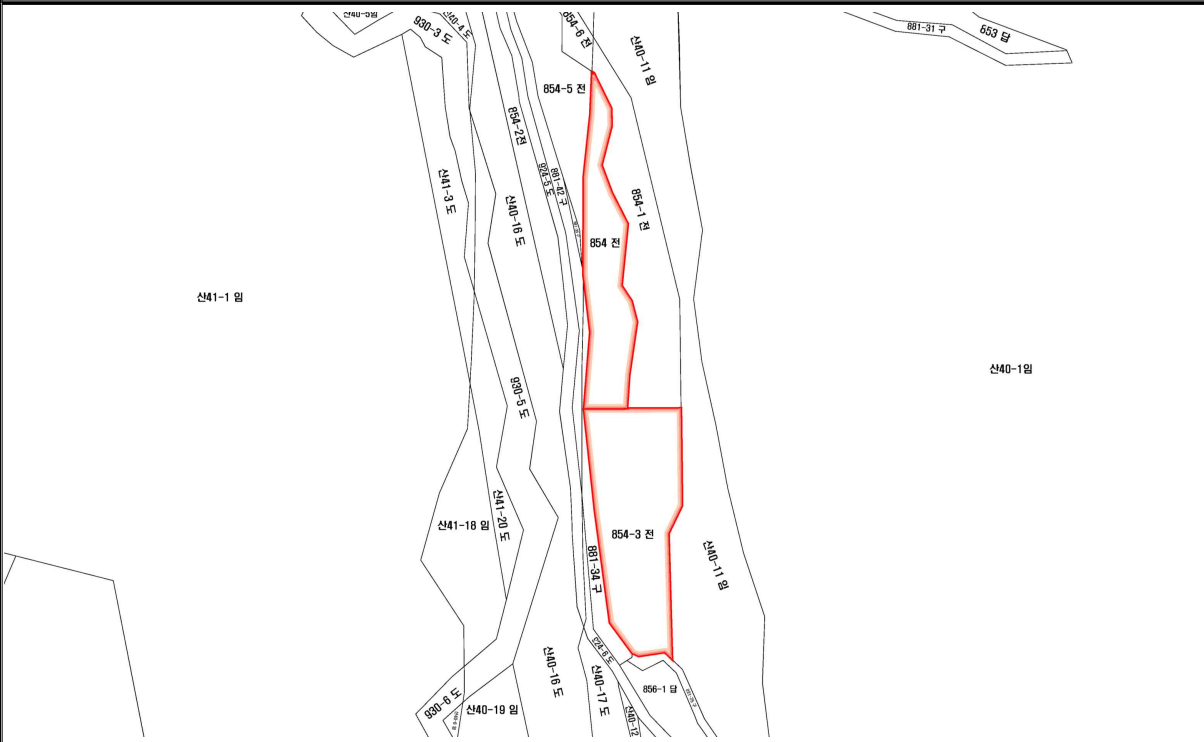
붙임1

위치도 및 지적도

□ 위치도



□ 지적도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강진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사업(변경)

1. 제안이유

- 2022년 제4회 공유재산 관리계획(2022-24호)에 반영된 “강진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사업” 과 관련하여 강진 하수처리장 위치가 변경됨에 따라 사업계획을 변경함.
- 사업계획 변경사유
 - 주민설명회 결과에 따라 “하수처리시설(처리장) 계획부지 위치 변경”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부지 위치 변경

2. 주요내용

- 위 치 : (당초) 영동군 매곡면 강진리 113-2, 114(1,087㎡)
(변경) 영동군 매곡면 강진리 953 (2,027㎡)
- 사업기간 : 2022. 07 ~ 2024. 03. (2024.02.26. 과업중지)
- 사업규모 : (당초) 건축연면적 144.9㎡
(변경) 건축연면적 144.9㎡(변동 없음)
- 사 업 비 : 11,118백만원 (국비 7,783 / 군비 3,335)
- 사업내용
 - 하수처리장 130㎡/일[설치 면적 : 450㎡, 하수관로 11.80km, 맨홀펌프장 9개소, 배수설비 318가구

3. 편입토지 (변경)현황

재산의 표시				소유자	토지이용계획	공시지가 (단위: 원)	비고
소재지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매곡면 강진리 113-2 (당초)	답	956㎡	956㎡	채종만	농림지역 생산관리지 역농업진흥구역가 축사육제한구역배출 시설설치제한구역	15,000원/ ㎡	
매곡면 강진리 114 (당초)	답	1,579㎡	189㎡	채종만	농림지역 생산관리지 역농업진흥구역가 축사육제한구역배출 시설설치제한구역	15,000원/ ㎡	
매곡면 강진리 953 (변경)	답	2,027㎡	2,027㎡	김정훈	농림지역,가축사 육제한구역,농업 진흥구역,배출시 설설치제한구역, 하천구역	12,800원/ ㎡	

4. 예산상황

○ 총사업비 : 11,118백만원 (국비 7,783 / 지방비 3,335)

○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총사업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이후	비고
계	11,118	-	618	5,121	5,379	
국비	7,783	-	300	3,742	3,741	
기금	2,668	-	-	1,283	1,385	
도비	200	-	8	96	96	
군비	467	-	310	-	157	

○ 세부사업별 소요예산

(단위 : 억원)

구 분	사업비	비 고
계	11,118	총사업비
공사비	9,733	처리시설 130톤
보상비	18	토지보상
실시설계비	443	실시설계용역비용
공사 감리비	916	건설사업관리비
시설부대비	8	부대경비

5. 사업협의를 및 승인신청결과

- 2021. 03. 16. : 강진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예산 신청
- 2021. 12. 22. : 강진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예산 확정

6.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7. 향후계획

- 2022. 09월 ~ : 영동군 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의결
- 2024. 02월 ~ : 주민의견 수렴 후 편입부지 변경
- 2024. 05월 ~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준공
- 2024. 06월 ~ : 설치인가 및 재원협의를 신청
- 2024. 11월 ~ : 공사 착공
- 2026. 12월 ~ : 공사 준공

붙임 : 위치도 및 지적도 1부.

붙임1

위치도 및 지적도

당 초 (2필지 / 1,087 m²)



변경 (1필지 / 2,027 m²) 940 m² ↑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동정어린이 안심공원 확대 조성사업(제2공구 사업)

1. 제안이유

-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어린이들의 밝고 건강한 놀이공간 확충을 위해 조성한 동정어린이 안심공원을 더욱 확장하여 녹색 공간을 제공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위 치 : 영동읍 동정리 91번지 일원
- 사업기간 : 2024. 4. ~ 2025. 12.
- 사업규모 : 1,300㎡(부지)
- 사 업 비 : 1,560백만원
- 사업내용
 - 어린이공원 확대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 1식
 - 어린이공원 확대 조성 실시설계 및 공사 집행 1식

3. 편입토지 현황

재산의 표시				소유자	토지이용계획	비고
소재지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영동읍 동정리 91	답	988㎡	988㎡	유정례 외4인	도시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매입

영동읍 동정리 88-8	답	41㎡	41㎡	영동군 (민원 과)	도시지역, 가축사육제 한구역, 배출시설설치 제한지역
영동읍 동정리 92-5	구	104㎡	43㎡	영동군 (재난 안전과)	도시지역, 가축사육제 한구역, 배출시설설치 제한지역
영동읍 동정리 93-7	장	1,634㎡	85㎡	영동군 (산림 녹지과)	도시지역, 가축사육제 한구역, 배출시설설치 제한지역
영동읍 동정리 128-2	구	771㎡	143㎡	국(농 림부)	도시지역, 가축사육제 한구역, 배출시설설치 제한지역

4. 예산상황

- 총사업비 : 1,560백만원(군비 100%)
-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계	1,560	0	840	720	0	0
국 비	0	0	0	0	0	0
도 비	0	0	0	0	0	0
군 비	1,560	0	840	720	0	0

- 세부사업별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비	비 고
총 계	1,560	총사업비
토지매입비	760	토지 988㎡ 매입비
실시설계비	80	공원조성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 용역
시설비	720	동정어린이 안심공원 확대 조성 사업 (동정어린이 안심공원 제2공구 사업)

5. 추진경과

- 2023. 02. 21. : 동정어린이 안심공원 실시설계 용역완료
- 2023. 08. 26. : 동정어린이 안심공원 실시계획 인가
- 2023. 12. 22. : 공사 준공
- 2024. 02. 05. : 제2공구 토지매입 대상(동정리 91번지) 감정평가 완료

6.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공유재산의 관리계획)
-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9조(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 등)

7. 향후계획

- 2024. 04. :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회 심의·의결
- 2024. 04. : 매입비 예산편성(1회 추경)
- 2024. 05. : 토지매입 및 등기이전
- 2024. 12. : 공원조성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 용역 완료
- 2025. 01.~ 2025. 02. : 공원조성계획 인가
- 2025. 03.~ 2025. 12. : 사업 계약 및 공사 추진

붙임 : 위치도 및 지적도 1부.

공유재산관리계획서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총괄표

회 계 명 : 일반회계

(단위 : 필지/동/㎡/백만원)

구 분		당 초			변 경			합 계			비 고	
		건 수	면 적	금 액	건 수	면 적	금 액	건 수	면 적	금 액		
취 득	계	토 지	34	216,861.00	826.03	4	5,974.00	310.70	38	222,835.00	1,136.73	
		건 물	2	1,150.00	2,358.00	3	4,642.00	15,200.00	5	5,792.00	17,558.00	
		기 타	2	167,645.00	5,073.30	2	1,300.00	4,800.00	4	168,945.00	9,873.30	
	1.매 입	토 지	34	216,861.00	826.03	4	5,974.00	310.70	38	222,835.00	1,136.73	
		건 물	2	1,150.00	2,358.00	3	4,642.00	15,200.00	5	5,792.00	17,558.00	
		기 타	2	167,645.00	5,073.30	2	1,300.00	4,800.00	4	168,945.00	9,873.30	
	2.교환으로 취득	토 지	0	0.00	0.00	0	0.00	0.00	0	0.00	0.00	
		건 물	0	0.00	0.00	0	0.00	0.00	0	0.00	0.00	
		기 타	0	0.00	0.00	0	0.00	0.00	0	0.00	0.00	
3.기타취득	토 지	0	0.00	0.00	0	0.00	0.00	0	0.00	0.00		
	건 물	0	0.00	0.00	0	0.00	0.00	0	0.00	0.00		
	기 타	0	0.00	0.00	0	0.00	0.00	0	0.00	0.00		

처 분	계	토 지	0	0.00	0.00	0	0.00	0.00	0	0.00	0.00
		건 물	0	0.00	0.00	0	0.00	0.00	0	0.00	0.00
		기 타	0	0.00	0.00	0	0.00	0.00	0	0.00	0.00
	1.매각,멸실 등	토 지	0	0.00	0.00	0	0.00	0.00	0	0.00	0.00
		건 물	0	0.00	0.00	0	0.00	0.00	0	0.00	0.00
		기 타	0	0.00	0.00	0	0.00	0.00	0	0.00	0.00
	2.양 여	토 지	0	0.00	0.00	0	0.00	0.00	0	0.00	0.00
		건 물	0	0.00	0.00	0	0.00	0.00	0	0.00	0.00
		기 타	0	0.00	0.00	0	0.00	0.00	0	0.00	0.00
3.교환으로 처분	토 지	0	0.00	0.00	0	0.00	0.00	0	0.00	0.00	
	건 물	0	0.00	0.00	0	0.00	0.00	0	0.00	0.00	
	기 타	0	0.00	0.00	0	0.00	0.00	0	0.00	0.00	
사용 및 대부허가	계	0	0.00	0.00	0	0.00	0.00	0	0.00	0.00	
	토 지	0	0.00	0.00	0	0.00	0.00	0	0.00	0.00	
	건 물	0	0.00	0.00	0	0.00	0.00	0	0.00	0.00	
	기 타	0	0.00	0.00	0	0.00	0.00	0	0.00	0.00	

- 정기분 : 양수발전소 주변 산림문화·휴양명소 조성 편입토지 취득, 영동전통시장 다목적 광장 조성사업, 심천면 노인복지회관 건립, 영동군 공설 종합장사시설 조성, 영동군 공설 종합장사시설 조성 관련 진입로 포장공사, 영동 실내소프트테니스장 추가 건립사업, 양산면 그라운드골프장 조성(변경)
- 제1차 수시분 : 영동 일라이트 클러스터 구축사업(변경(고순도 일라이트 지원센터 건립 및 장비구축)), 영동 종합관광 안내 정보센터 건립, 생활폐기물 다목적 선별 및 보관시설 구축, 강진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사업(부지변경), 동정어린이 안심공원 확대 조성사업(제2공구 사업)

2024년 제1차 수시분 취득대상 재산목록

(단위 : m², 백만원)

일련 번호	재 산 의 표 시				취득면적	공시지가액 (시가표준액, 공사비)	취 득 시 기	취 득 사 유	취득재산 전소유자	회차 구분	비고
	구분	소재지	지목	면적 (연면적)							
계		토지 4필지, 건물 3개소, 기타 2개소			11,916.00	20,310.70					
1	건물	용산면 한곡리 558	공장 용지		1,551	4,100.00	2024-2026	고순도 일라이트 지원센터 건립		제1차 수시분	신축
2	기타	용산면 한곡리 558				4,000.00	2024-2026	고순도 일라이트 지원센터 장비 구축		제1차 수시분	장비 구입
3	건물	영동읍 매천리 160-2번지 일원			2,100	10,000.00	2024-2025	영동 종합관광 안내 정보센터 건립		제1차 수시분	신축
4	토지	용산면 울리 854	전	1,118	1,118	29.60	2024	생활폐기물 다목적 선별 및 보관시설 구축	김달호	제1차 수시분	
5	토지	용산면 울리 854-3	전	1,841	1,841	46.70	2024	생활폐기물 다목적 선별 및 보관시설 구축	김달호	제1차 수시분	
6	건물	용산면 울리 854, 854-3			991	1100.00	2024-2025	생활폐기물 다목적 선별 및 보관시설 구축 (선별장 1식)		제1차 수시분	신축
7	토지	매곡면 강진리 953	답	2,027	2,027	25.90	2024	강진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사업 (부지변경)	김정훈	제1차 수시분	매입
8	토지	영동읍 동정리 91	답	988	988	208.50	2024	동정어린이 안심공원 확대 조성사업 (제2공구 사업)	유정례 외 4인	제1차 수시분	매입
9	기타	영동읍 동정리 91번지 일원			1,300	800.00	2024-2025	동정어린이 안심공원 확대 조성사업 (제2공구 사업)		제1차 수시분	공원 조성

2024년 제1차 수시분 처분대상 재산목록

(단위 : m², 백만원)

일련 번호	재 산 의 표 시				처분면적	매각예정액	처분 시기	처 분 사 유	소유자	회차구분	비고
	구분	소재지	지목	면적 (연면적)							
계		0필지		0.00	0.00	0.00					
				해	당	없	음			제1차 수시분	